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42 호】

2014년 01월 17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조 례

고양시조례 제1568호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조례 제1569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고양시조례 제1570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
고양시조례 제157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고양시조례 제1572호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고양시조례 제157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고양시조례 제1574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고양시조례 제1575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고 시

고양시고시 제2014-27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69
-----------------	----------------	----

공 고

고양시공고 제2014-85호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허가지침 공고	70
-----------------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68호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27호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을 제1조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단체 정의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u>제2조(사회단체 정의에 관한 특례)</u> 제2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로 본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이윤승 · 권순영 의원

□ 개정이유

- 2013년 10월 4일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음.
- 동 조례에 따라 적용 특례 없이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많은 미등록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현실적으로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미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특례규정을 두어 조정함.
(부칙 개정)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69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중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심의회 운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지방채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지방채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제안자 : 선재길 · 선주만 · 장제환 · 박시동의원

□ 제정이유

-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설치의 목적을 정함. (제1조)
-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까지로 정함. (제10조)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0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치공동체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

다.

4. “사업주체”란 자치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지향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주체의 책무)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자치공동체 사업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0조(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치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주민자치위원 교육·교류사업·컨설팅 추진
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
9. 그 밖에 자치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자치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치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 공모 및 선정
5. 사업의 분석·평가
6.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7.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공동체·교육문화·도시주택·환경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 2. 주민, 전문가 등 자치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제24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2.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3.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5.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7.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8. 그 밖에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안자 : 소영환 · 이화우 · 오영숙 · 전주만의원

□ 제안이유

- 주민자치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치공동체 사업 기본원칙을 규정함 (제3조)
- 자치공동체 사업을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제4조)
-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 및 제8조)
-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제10조)
-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제11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4조)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함.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자치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 확대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부서의 장과 공무원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에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모집의 예외의 경우이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제5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의 자체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위촉직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인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위원을 충원하는 경우

②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일비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매년 12월까지)
 2. 전년도 연간 운영내역서(매년 1월까지)
 3. 위원회 관리카드(매년 1월까지)
 4. 위원 명단(매년 1월까지, 변동 시 수시)
 5. 회의 결과서(회의종료 1개월 이내)
- ②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② 다만,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전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15조(위원회 관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
 2. 시민 참여 확대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3.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 풀 관리운영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치 검토 시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시
 3.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평가 시
-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 1명

3. 외부 관계 전문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관과		주민자치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주민자치과장 이 양 천
	팀 장 직위 · 성명	참여자치팀장 박 성 식
	담 당 자 성명 · 전화	이 지 홍 031-8075-2454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u><신 설></u>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u> 위원을 말한다. 3. (생략) 4. "총괄부서"란 <u>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u>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부서의 장과 공무원 중에서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u> 위원을 말한다. 3.<u>시장이</u> <u>위촉한</u>.....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u>위원회의</u>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1.~2. (생략) <u><신 설></u> 3. (생략) ②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u>설치평가서와 조례안</u>을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u>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u> <u>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3.(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른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고 성별 구성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③ (현행과 같음) 1. 설치 2.~3.(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등) <삭 제>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는 위촉직 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에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모집의 예외의 경우이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신설>	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에서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5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	개정안
제6조(선정위원회)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야 하며, 모집절차, 구비서류, 심사지표 등은 담당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른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관계 전문가 6명 이상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1. (생략)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제7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의 다만, 각 호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의 자체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위촉직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인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위원을 충원하는 경우 <삭제> ②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8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스스로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현행	개정안
4.~5. (생략)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u><신 설></u> <u>제8조(의견 청취 등)</u>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u><삭 제></u>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9조(위원의 제척 등)</u>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u>제10조(의견 청취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전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9조(일비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일비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② 시 소속 공무원이 ③ 제10조제1항..... ④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회의록)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시장.....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이를
제11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위원회 설치평가서(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시) ② (생략)	제13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신 설> 1. (생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1.~3.(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9조제1항에 따른 4. 인정하거나
제13조(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위원회 연간 운영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정비 등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위원회 관리 등) ① 제13조에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 2. 시민 참여 확대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3.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풀 관리 운영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위원회 운영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제14조(시행규칙) (생략)</u>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u>제16조(자문위원회)</u>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치 검토 시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시 3.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평가 시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 1명 3. 외부 관계 전문가 <u>제17조(시행규칙) (현행 제14조와 같음)</u>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및 위원의 제척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관리부서의 건의 의견인 선정위원회의 탄력적인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의 성비 구성 규정을 명시함(제5조)
- 나.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함(제6조)
- 다. 선정위원회의 탄력적인 구성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함(제7조)
- 라.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함(제9조)
- 마.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제15조)
- 바.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된 자문위원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제16조)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2호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주소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교양 및 오락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의원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하며 복지관은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고양시민으로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과		노인장애인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노인장애인과장 한 진 우
	팀 장 성 명	노인복지팀장 최 석 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계 정 (031-8075-3292)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명칭 및 위치)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명칭</th><th style="width: 70%;">주소</th></tr> <tr> <td>덕양노인종합복지관</td><td>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번지</td></tr> <tr> <td>일산노인종합복지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호수공원내)</td></tr> </table> 제3조(업무) (생략) 1.~4. (생략) 5. <u>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u> 6. (생략) 제4조(시설) (생략)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생략)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9. (생략) 제5조(직원의 배치) ①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명칭	주소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번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호수공원내)	<u>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명칭</th><th style="width: 70%;">주소</th></tr> <tr> <td><u>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u></td><td>고양시 덕양구 <u>어울림로 49(화정동)</u></td></tr> <tr> <td><u>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u></td><td>고양시 일산동구 <u>호수로 731(장항동)</u></td></tr> <tr> <td><u>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u></td><td><u>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대화동)</u></td></tr> </table>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재가노인 복지사업</u> 6.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 (현행과 같음) 1. 사무실 2. (현행과 같음) 3. 상담실 4.~9.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운영관리) ①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명칭	주소	<u>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u>	고양시 덕양구 <u>어울림로 49(화정동)</u>	<u>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u>	고양시 일산동구 <u>호수로 731(장항동)</u>	<u>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u>	<u>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대화동)</u>
명칭	주소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번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호수공원내)														
명칭	주소														
<u>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u>	고양시 덕양구 <u>어울림로 49(화정동)</u>														
<u>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u>	고양시 일산동구 <u>호수로 731(장항동)</u>														
<u>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u>	<u>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대화동)</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경쟁으로 한다.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노인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⑥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노인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 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제7조(위탁의 취소)</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u>제8조(손해배상)</u>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7조(운영보조)</u> 제6조제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유지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관 위탁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u>제9조(운영비 보조)</u> 시장은 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다 시민 중심의 건전한 복지서비스 운영 환경으로 갖추고자 위탁운영의 기간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 2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명칭 변경과 새주소로의 정정 및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 마련 (제2조)
- 노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제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중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 포함 최장 6년까지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위원 위촉의 제한) 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

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매 월1회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시킬 수 있다. 다만,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제68조의2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보완·확정 과정에서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 안건 당사자(이하 “안건 당사자”라 한다)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한 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접촉 가능)

제71조의 제목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을 “자료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72조 제2항 중 “법 제113조제6항”을 “법 제113조의2”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535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제1조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18호 및 제20호 별표 관련 건축제한에 관하여 2013년 10월 4일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 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2013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은 신청서 상의 건축규모 내에서 2013년 10월 4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사항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0조제19호 별표 관련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 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과		도시계획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과장 김 용 섭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이 재 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창 용 031-8075-3076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 2012.9.28>
12. <삭제 2009.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8.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장월평천, 도춘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구성) ①~④ (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6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 임기간 포함 최장 6년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66조의3(위원 위촉의 제한) 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 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 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 하며 위촉 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내지·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 2012.9.28> 12. <삭제 2009.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신설 2009.9.29> 18.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장월평천, 도춘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을 말한다. <신설 2009.12.18>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u>같은 호 나목 및 사목</u>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u>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u>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u>「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 11. <삭제 2012.9.28> 12. <삭제 2009.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신설 2009.9.29> 18.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장월평천, 도춘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을 말한다. <신설 2009.12.18>

현행	개정안
부칙<2013.10.4 조례 제1527호>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2013.10.4 조례 제1527호>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u> <u>부터 시행한다.</u>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된 조례 개정 및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례 조항을 개정 추진함

□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변경 및 연수 제한(제66조)
(연임 횟수 : 2회→3회, 연수 : 최장 6년)
- 나. 위촉직 위원의 제한 규정 신설 (제66조의3)
- 다. 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와 비공식적 사전 접촉 시 해촉 규정 마련 (제68조의2)
- 라. 위원회 심의(자문)시 안건 당사자의 참석에 대한 조항 마련(제71조)
-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상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불일치한 조례 조항 정비(제72조)
- 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제30조 별표 19)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4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 1 하단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원)			
구경 (m/m)	요금 (원)	업종	사용량(㎥)	요금(원)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1,090 1,470 1,990 3,020 4,450 11,830 17,620 50,270 82,440 97,190 198,43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20㎥까지 사용량	430	
			다음 10㎥까지 사용량	510	
			30㎥ 초과 사용량	690	
		일반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까지 사용량	520	
			다음 200㎥까지 사용량	620	
			다음 700㎥까지 사용량	780	
			다음 1000㎥까지 사용량	1,040	
			2000㎥ 초과 사용량	1,170	
			대중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0㎥까지 사용량	40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4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70	
		2000㎥ 초과 사용량		610	
-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 의 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용 사용요금 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 제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	업종별 사용요금(㎡/원)	
구경 (mm)	요금 (원)		요금 (원)	요금(원)
13m/m	1,09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20㎡까지 사용량	430
20m/m	1,470		다음 10㎡까지 사용량	510
25m/m	1,990		30㎡ 초과 사용량	690
32m/m	3,020	일반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까지 사용량	520
40m/m	4,450		다음 200㎡까지 사용량	620
50m/m	11,830		다음 700㎡까지 사용량	780
75m/m	17,620		다음 1000㎡까지 사용량	1,040
			2000㎡ 초과 사용량	1,170
100m/m	50,270	대중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0㎡까지 사용량	400
150m/m	82,44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40
200m/m	97,19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70
250m/m	198,430		2000㎡ 초과 사용량	610
-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조·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	업종별 사용요금(㎡/원)	
구경 (mm)	요금 (원)		요금 (원)	요금(원)
13m/m	1,09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20㎡까지 사용량	430
20m/m	1,470		다음 10㎡까지 사용량	510
25m/m	1,990		30㎡ 초과 사용량	690
32m/m	3,020	일반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까지 사용량	520
40m/m	4,450		다음 200㎡까지 사용량	620
50m/m	11,830		다음 700㎡까지 사용량	780
75m/m	17,620		다음 1000㎡까지 사용량	1,040
			2000㎡ 초과 사용량	1,170
100m/m	50,270	대중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1000㎡까지 사용량	400
150m/m	82,44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40
200m/m	97,19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70
250m/m	198,430		2000㎡ 초과 사용량	610
-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조·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별첨】

경기도 상수도요금 적용 현황(최저요금 순)

연번	시·군명	상수도 (시·군 기준)				참고사항
		업종	단계별	사용량(㎥)	2012년	
1	성남시	업무용	5단계	301이상	540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 요금의 10% 감면
2	안산시	일반용	1단계	1~50	555	1단계 일률 적용
3	오산시	일반용	1단계	1~50	640	1단계 일률 적용
4	구리시	업무용	1단계	1~30	680	1단계 일률 적용
5	파주시	업무용	1단계	0~20	680	1단계 일률 적용
6	부천시	일반용	1단계	1~100	720	1단계 일률 적용
7	연천군	업무용	1단계	1~100	720	1단계 일률 적용
8	수원시	업무용	1단계	1~100	730	1단계 일률 적용
9	용인시	업무용	2단계	51~100	730	학교는 사용량이 3단계 이상일 경우 업무용 2단계 요율을 적용
10	화성시	일반용	1단계	1~50	740	1단계 일률 적용
11	여주시	업무용	1단계	1~50	750	1단계 일률 적용
12	하남시	일반용	1단계	1~100	770	1단계 일률 적용
13	의왕시	업무용	1단계	1~100	779	1단계 일률 적용
14	김포시	일반용	1단계	1~50	790	1단계 일률 적용
15	남양주시	업무용	1단계	1~100	810	1단계 일률 적용
16	광명시	일반용	1단계	0~50	850	1단계 일률 적용
17	안양시	업무용	1단계	1~100	860	1단계 일률 적용
18	가평군	일반용	1단계	1~100	870	1단계 일률 적용
19	광주시	일반용	1단계	1~50	890	1단계 일률 적용
20	포천시	업무용	1단계	0~100	890	1단계 일률 적용

연번	시·군명	상수도 (시·군 기준)				참고사항
		업종	단계별	사용량(㎥)	2012년	
21	시흥시	업무용	1단계	1~100	900	1단계 일률 적용
22	고양시	일반용	5단계	2,001 이상	936	현재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 20% 감면 적용
23	평택시	업무용	1단계	0~50	940	1단계 일률 적용
24	의정부시	일반용	1단계	1~100	940	1단계 일률 적용
25	동두천시	업무용	1단계	1~100	1,000	1단계 일률 적용
26	양주시	업무용	1단계	1~100	1,000	1단계 일률 적용
27	이천시	업무용	1단계	0~50	1,040	1단계 일률 적용
28	과천시	업무용	5단계	301이상	1,090	단계별 요금 20% 감면 적용
29	군포시	업무용	5단계	2,001이상	1,216	초중등학교는 부과요금의 20%를 감면
30	안성시	일반용	1단계	1~100	1,240	1단계 일률 적용
31	양평군	일반용	6단계	1,001이상	1,564	요금감면 조항 없음
평균					877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김혜련 의원

□ 개정이유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학교의 수도요금 1단계 일률적용을 함으로써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 고양시 관내 학교의 상수도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1단계 일률적용을 받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수도요금의 부담이 큼.
- 이에 고양시도 상수도요금 1단계 일률적용을 통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별표1)

고양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조례 제1575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고, 별표 1 하단 제2호 중 주)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양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198	234	261	311	338
	21-30	330	390	436	519	565
	31이상	396	468	524	623	679
일반용	1-50	385	456	510	606	660
	51-100	495	586	655	779	848
	101이상	582	688	770	915	997
대중탕용	1-200	264	312	349	415	452
	201-500	374	442	494	588	640
	501이상	517	611	684	813	886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단,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동일공동주택 내 혼재할 경우 주된 하수배재방식을 적용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감면 등) ① (생략) 1~12. (생략) 13.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제35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개 정 안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양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table><tr><th rowspan="3">구분 업종</th><th rowspan="3">사용 공분(㎥/월)</th><th colspan="4">사용요율 ㎡당 단가(원)</th></tr><tr><th rowspan="2">2013년</th><th colspan="2">2014년</th><th rowspan="2">2015년부터</th></tr><tr><th>합류식지역</th><th>분류식지역</th></tr><tr><td rowspan="3">가정용</td><td>1-20</td><td>198</td><td>234</td><td>261</td><td>311</td></tr><tr><td>21-30</td><td>330</td><td>390</td><td>436</td><td>519</td></tr><tr><td>31이상</td><td>396</td><td>468</td><td>524</td><td>623</td></tr><tr><td rowspan="4">일반용</td><td>1-50</td><td>385</td><td>456</td><td>510</td><td>606</td></tr><tr><td>51-100</td><td>495</td><td>586</td><td>655</td><td>779</td></tr><tr><td>101이상</td><td>582</td><td>688</td><td>770</td><td>915</td></tr><tr><td>1-200</td><td>264</td><td>312</td><td>349</td><td>415</td></tr><tr><td rowspan="2">대중탕</td><td>201-500</td><td>374</td><td>442</td><td>494</td><td>588</td></tr><tr><td>501이상</td><td>517</td><td>611</td><td>684</td><td>813</td></tr></table>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단,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동일공동주택 내 혼재할 경우 주된 하수배재방식을 적용 < 신 설 >		구분 업종	사용 공분(㎥/월)	사용요율 ㎡당 단가(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198	234	261	311	21-30	330	390	436	519	31이상	396	468	524	623	일반용	1-50	385	456	510	606	51-100	495	586	655	779	101이상	582	688	770	915	1-200	264	312	349	415	대중탕	201-500	374	442	494	588	501이상	517	611	684	813
구분 업종	사용 공분(㎥/월)			사용요율 ㎡당 단가(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198	234	261	311																																																								
	21-30	330	390	436	519																																																								
	31이상	396	468	524	623																																																								
일반용	1-50	385	456	510	606																																																								
	51-100	495	586	655	779																																																								
	101이상	582	688	770	915																																																								
	1-200	264	312	349	415																																																								
대중탕	201-500	374	442	494	588																																																								
	501이상	517	611	684	813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양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table><tr><th rowspan="3">구분 업종</th><th rowspan="3">사용 공분(㎥/월)</th><th colspan="4">사용요율 ㎡당 단가(원)</th></tr><tr><th rowspan="2">2013년</th><th colspan="2">2014년</th><th rowspan="2">2015년부터</th></tr><tr><th>합류식지역</th><th>분류식지역</th></tr><tr><td rowspan="3">가정용</td><td>1-20</td><td>198</td><td>234</td><td>261</td><td>311</td></tr><tr><td>21-30</td><td>330</td><td>390</td><td>436</td><td>519</td></tr><tr><td>31이상</td><td>396</td><td>468</td><td>524</td><td>623</td></tr><tr><td rowspan="4">일반용</td><td>1-50</td><td>385</td><td>456</td><td>510</td><td>606</td></tr><tr><td>51-100</td><td>495</td><td>586</td><td>655</td><td>779</td></tr><tr><td>101이상</td><td>582</td><td>688</td><td>770</td><td>915</td></tr><tr><td>1-200</td><td>264</td><td>312</td><td>349</td><td>415</td></tr><tr><td rowspan="2">대중탕</td><td>201-500</td><td>374</td><td>442</td><td>494</td><td>588</td></tr><tr><td>501이상</td><td>517</td><td>611</td><td>684</td><td>813</td></tr></table>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단,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동일공동주택 내 혼재할 경우 주된 하수배재방식을 적용 < 신 설 >		구분 업종	사용 공분(㎥/월)	사용요율 ㎡당 단가(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198	234	261	311	21-30	330	390	436	519	31이상	396	468	524	623	일반용	1-50	385	456	510	606	51-100	495	586	655	779	101이상	582	688	770	915	1-200	264	312	349	415	대중탕	201-500	374	442	494	588	501이상	517	611	684	813
구분 업종	사용 공분(㎥/월)			사용요율 ㎡당 단가(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198	234	261	311																																																								
	21-30	330	390	436	519																																																								
	31이상	396	468	524	623																																																								
일반용	1-50	385	456	510	606																																																								
	51-100	495	586	655	779																																																								
	101이상	582	688	770	915																																																								
	1-200	264	312	349	415																																																								
대중탕	201-500	374	442	494	588																																																								
	501이상	517	611	684	813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김혜련 의원

□ 개정이유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학교의 하수도요금을 1단계 일률적용을 함으로써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이에 고양시도 하수도요금 1단계 일률적용을 통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별표 1)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에 시행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고양시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3번길
- 2)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2. 사업시행의 목적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30사단의 관사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함.

3. 사업시행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19-18번지 일원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개요

- 1) 종 류 : 하수도
- 2) 명 칭 : 고양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D-1지역) 외부관로 매설공사
- 3) 개 요 : 오수관 - D400, L=975.5m, D300, L=98.5m
압송관 - D200, L=571.5m
소규모펌프장 - 맨홀펌프장 1개소

5. 계획처리구역 및 계획하수량

- 1) 난지처리구역 : 화전1처리분구
- 2) 계획처리면적 : 7.285km² 중 과업면적 2.90km²
- 3) 계획 하수량 : 1,800m³/일

6.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4.10.31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및 관계 설계도서는 고양시 하수행정과에서 열람 (☎ 031-8075-4565)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에 시행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3번길
- 2)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2. 사업시행의 목적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30사단의 관사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함.

3. 사업시행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19-18번지 일원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개요

- 1) 종 류 : 하수도
- 2) 명 칭 : 고양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D-1지역) 외부관로 매설공사
- 3) 개 요 : 오수관 - D400, L=975.5m, D300, L=98.5m
압송관 - D200, L=571.5m
소규모펌프장 - 맨홀펌프장 1개소

5. 계획처리구역 및 계획하수량

- 1) 난지처리구역 : 화전1처리분구
- 2) 계획처리면적 : 7.285km² 중 과업면적 2.90km²
- 3) 계획 하수량 : 1,800m³/일

6.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4.10.31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및 관계 설계도서는 고양시 하수행정과에서 열람 (☎ 031-8075-4565)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허가지침 공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17

고양시장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촉법」”이라한다)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는 「도촉법」 제8조 및 도정법 제5조에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등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제2절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의 용어의 정의는 「도촉법」·「도정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2. “재정비 존치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 가.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고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말한다.
 - 나. 존치관리구역(존치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 다. 존치건축물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존치가 결정된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및 제한

1. 본 지침은 「도축법」 제12조 또는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에 의거 결정·고시된 “고양시 정비 구역 및 준치지역에 「도축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도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장은 제2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거나, 주민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신고)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대지 안에서 이 지침 제2장(건축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절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건축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절 정비구역 및 준치지역에서의 허가 및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범위

1. 건축물 허가 및 신고

- 가. 준치관리구역 또는 준치건축물은 개별법령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준치정비구역에 한하여 재축은 할 수 있다.
- 나. 준치정비구역내에서는 연면적 20㎡이하 정비구역, 촉진구역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1호의 연면적 10㎡이하의 증축으로 세대수 증가 없는 증축(별동 증축 불가)에 한하며, 조합설립이 된 구역에서는 조합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 건축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다만 촉진구역, 정비구역에서 주택에서 건축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시설군(영업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2. 대수선

- 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 다만 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내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수선에 한한다.

3.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 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다만 촉진구역, 정비구역 내에서는 조합설립이 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제한할 수 있다.

4.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

- 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공작물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는 촉진구역·정비구역에서 할 수 없다.

5.토지의 형질변경

가. 본 지침 제2장 제1절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위한 형질변경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다만 조합설립이 된 경우 조합의건을 들어 존치기간(기간 연장)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지침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의 유권해석은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의 해석에 의한다.